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형사2부장 장소영

전화 02-3270-4336

보도자료

2023. 1. 20.(금)

제 목

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 관계자 4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(제11조 제1항)

-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오늘(1. 20.) **2022년 이태원 참사**와 관련하여,
- ① **용산구청장 A**를 ㉠업무상과실치사상 및 ㉡허위공문서작성·행사(검찰 직접 혐의 확인하여 추가 입건)로, ② **前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B**를 ㉠업무상과실치사상 및 ㉢직무유기로 각각 **구속 기소**하고,
 - 위 A, B 등과 ㉠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범으로 ③ **前 용산구청 부구청장 C**, ④ **前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D**를 각각 **불구속 기소**하였습니다.

※ 피고인별 기소 죄명

신병	피고인	신분	기소 죄명
구속	①A	용산구청장	㉠ 업무상과실치사상 ㉡ 허위공문서작성, 동행사
	②B	前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	㉠ 업무상과실치사상 ㉢ 직무유기
불구속	③C	前 용산구청 부구청장	㉠ 업무상과실치사상
	④D	前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	㉠ 업무상과실치사상

- ㉠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①A, ②B, ③C, ④D에 대하여는,
 - 이 사건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및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,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, △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고, △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, △경찰,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고,
 - △SNS, 당직실 등을 통해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, 인력 배치, 도로 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,
 - △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실패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후에도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.
- ㉡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①A에 대하여는,
 - 사상의 결과 발생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,
 - A는 용산구청의 직원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 도착 시간,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,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.[검찰 직접 혐의 확인하여 추가 입건]
- ㉢ 직무유기로 기소된 ②B에 대하여는,
 - 사상의 결과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,
 -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재난 대응 및 현장 수습 등을 하여야 할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.

I

피고인

- ① 구속 A (61세, 용산구청장)
- ② 구속 B (58세, 前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)
- ③ 불구속 C (56세, 前 용산구청 부구청장)
- ④ 불구속 D (59세, 前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)

II

공소사실 요지

- A, B, C, D는 공동하여, 2022. 10. 29.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되어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됨에도,
 - 그 위험에 대한 대비·대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58명 사망, 294명 상해 [업무상과실치사상]
- A는 2022. 10. 30. A의 뒤늦은 사고 현장 도착 및 재난 대응 조치 지연 등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,
 - A의 도착 시각, 용산구청장의 재난 대응 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(보도자료)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행사 [허위공문서작성, 동행사]
- B는 2022. 10. 29. 23:25경 이태원 일대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,
 - 2022. 10. 30. 07:30경까지 법령, 매뉴얼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[직무유기]

III

주요 경과

- 2022. 12. 26. A 및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
- 2023. 1. 3. 경찰, A, B 구속 송치 및 C, D 불구속 송치
- 2023. 1. 19. 서울서부지검, A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추가 입건
- 2023. 1. 20. A·B 구속 기소, C·D 불구속 기소

IV

참고사항

- 2023. 1. 13.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계속 중임 ☐